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2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 및 돌봄SOS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를 1,420명에서 1,454명으로 증원(안 제2조)

- 행정기구 개편(1국 2과 7팀 신설)에 따른 정원 증원 : 10명
-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: 6명
- 돌봄SOS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: 18명

나.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(안 별표 2)

-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

구분	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 이하	전문경력관
현행	비율	(1)%이내	(5)%이내	(22)%이내	(32)%이내	(32)%이내	(7)%이상	(1)%이내
개정안	비율	(1)%이내	(5)%이내	(22)%이내	(33)%이내	(33)%이내	(5)%이상	(1)%이내

다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 3)

- 총 계 : 1,420명 → 1,454명 (34명 증)

- 일반직 계 : 1,409명 → 1,443명 (34명 증)
- 일반직 4급 계 : 7명 → 8명 (본청 1명 증)
- 일반직 5급 계 : 61명 → 63명 (본청 2명 증)
- 일반직 6급 이하 계 : 1,339명 → 1,370명 (31명 증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
(정원의 관리)부터 제30조(정원의 규정)까지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8. 16. ~ 23.(7일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420명”을 “1,45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391명”을 “1,42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(33)% 이내	(33)% 이내	(5)% 이상	(1)% 이내

별표 3 중 직급별 총 계란, 일반직 계란, 4급 계란, 5급 계란,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
총 계	1,454	1,454				
일반직 계	1,443	1,443				
4급	8	6	1	1		
5급	63	36	1	9	1	16
6급 이하 계	1,370	1,370			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420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1,391명</u> 2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 <u>1,454명</u>----- -----. 1. ----- <u>1,425명</u> 2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]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원칙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 1. 일반직공무원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4급 이상</th><th>5급</th><th>6급</th><th>7급</th><th>8급</th><th>9급</th><th>전문 경력관</th></tr><tr><td>비율</td><td>(1)% 이내</td><td>(5)% 이내</td><td>(22)% 이내</td><td>(32)% 이내</td><td>(32)% 이내</td><td>(7)% 이상</td><td>(1)% 이내</td></tr></table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	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(32)% 이내	(32)% 이내	(7)% 이상	(1)% 이내	[별표 2]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원칙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 1. 일반직공무원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4급 이상</th><th>5급</th><th>6급</th><th>7급</th><th>8급</th><th>9급</th><th>전문 경력관</th></tr><tr><td>비율</td><td>(1)% 이내</td><td>(5)% 이내</td><td>(22)% 이내</td><td>(33)% 이내</td><td>(33)% 이내</td><td>(5)% 이상</td><td>(1)% 이내</td></tr></table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	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(33)% 이내	(33)% 이내	(5)% 이상	(1)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(32)% 이내	(32)% 이내	(7)% 이상	(1)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(33)% 이내	(33)% 이내	(5)% 이상	(1)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(생략) 3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 <table><tr><th>기관별 직급별</th><th>총 계</th><th>구분청</th><th>의회 사무국</th><th>보건소</th><th>사업소</th><th>등</th></tr><tr><td>총 계</td><td><u>1,420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420</u></td></tr><tr><td colspan="7">(생략)</td></tr>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<u>1,409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409</u></td></tr><tr><td colspan="7">(생략)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<u>7</u></td><td><u>5</u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<u>61</u></td><td><u>34</u></td><td>1</td><td>9</td><td>1</td><td>16</td></tr><tr><td>6급 이하 계</td><td><u>1,339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339</u></td></tr><tr><td colspan="7">(생략)</td></tr>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등	총 계	<u>1,420</u>	<u>1,420</u>					(생략)							일반직 계	<u>1,409</u>	<u>1,409</u>					(생략)							4급	<u>7</u>	<u>5</u>	1	1			5급	<u>61</u>	<u>34</u>	1	9	1	16	6급 이하 계	<u>1,339</u>	<u>1,339</u>					(생략)							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 <table><tr><th>기관별 직급별</th><th>총 계</th><th>구분청</th><th>의회 사무국</th><th>보건소</th><th>사업소</th><th>등</th></tr><tr><td>총 계</td><td><u>1,454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454</u></td></tr><tr><td colspan="7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<u>1,443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443</u></td></tr><tr><td colspan="7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<u>8</u></td><td><u>6</u>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<u>63</u></td><td><u>36</u></td><td>1</td><td>9</td><td>1</td><td>16</td></tr><tr><td>6급 이하 계</td><td><u>1,370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370</u></td></tr><tr><td colspan="7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등	총 계	<u>1,454</u>	<u>1,454</u>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일반직 계	<u>1,443</u>	<u>1,443</u>					(현행과 같음)							4급	<u>8</u>	<u>6</u>	1	1			5급	<u>63</u>	<u>36</u>	1	9	1	16	6급 이하 계	<u>1,370</u>	<u>1,370</u>					(현행과 같음)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420</u>	<u>1,42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409</u>	<u>1,40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7</u>	<u>5</u>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61</u>	<u>34</u>	1	9	1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<u>1,339</u>	<u>1,33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454</u>	<u>1,454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443</u>	<u>1,44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8</u>	<u>6</u>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63</u>	<u>36</u>	1	9	1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<u>1,370</u>	<u>1,37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(1) 발생요인 : 정원증원(34명)에 따른 인건비
- (2) 관련조문 : 안 제2조(정원의 총수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내에서 예산운용
- 나. 인건비 단가는 2019년 직급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정원증원(34명)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

- 연간 소요액('19년 기준) : 20억4천만원(시비 4억3천, 구비 16억1천)
- '19년 추가 소요액(2개월 기준) : 3억4천만원(시비 7천, 구비 2억7천)

(단위 : 천원)

직급	인원증감 (a)	1인당 평균 연간 인건비(b)	연간 인건비 증감액(c=a×b)	'19년 인건비 (d=c/12월×2)	비고
4급	+1	101,489	101,489	16,915	'19년 직급별 평균인건비 기준 산정 (기본급, 각종수당, 상여금 등 포함)
5급	+2	84,699	169,398	28,233	
6급	+7	77,464	542,248	90,375	
7급	+7	63,353	443,471	73,912	
8급	+17	46,072	783,224	130,537	
계	+34	-	2,039,830	339,972	
시비			425,250	70,875	돌봄18명 증원분 (시비75% 지원)
구비			1,614,580	269,097	

나.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

- '19년 기준인건비 내 증원 인력 운영 가능(편성 여유분 2,822,584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9년 기준인건비	2019년 편성예산	비 고
금 액	122,874,737	120,052,153	

다. 연도별 비용 추계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합계
시비(a)	70,875	425,250	425,250	425,250	425,250	1,771,875
구비(b)	269,097	1,651,297	1,688,675	1,726,725	1,765,461	7,101,255
계(a+b)	339,972	2,076,547	2,113,925	2,151,975	2,190,711	8,873,130

※ 인건비 상승분 : 연간 1.8% 반영(2019년 기준)

4. 재원조달 방안 : 구비예산 편성('19년 인건비는 기존 편성예산 우선 활용)

5. 덧붙이는 의견 : 비용추계의 세부세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총무과 이은영 (☎8216)